

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숙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93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
발 의 자: 이숙자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김영철, 김원태,
김재진, 김태수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박 석, 신복자, 유정인,
윤영희, 윤종복, 이상욱,
이성배, 이원형, 이종태,
이종환, 정준호, 최민규,
황철규 의원(22명)

1. 제안이유

-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‘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’을 2024년 12월 31일 확정 및 고시하였고,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, 녹색건축 기술육성,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, 그린리모델링 확장이라는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함.
- 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바,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술 중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하도록 하여 시범사업에 관련 기술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시 단열기술, 전기 기계설비,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술 중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하도록 함(제9조제2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

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범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술 중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.

1. 중단열 등 건물 단열에 관한 기술
2. 고효율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
3. 태양광, 태양열,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기술
4.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술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) (생 략)	제9조(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시범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술 중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 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. 1. <u>중단열 등 건물 단열에 관한 기술</u> 2. <u>고효율 전기설비 및 기계설 비에 관한 기술</u> 3. <u>태양광, 태양열, 지열 등 신재 생에너지에 관한 기술</u> 4. <u>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술</u>

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9조(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)제2항을 신설하여,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술 중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하도록 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 계 분 석 관	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